

“자원순환형 사회를 선도하는”



한국건설자원협회

수신자 각 지회장 및 대표이사
(경유)

참 조 사무국장

제 목 적격업체 평가기준 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 알림



1. 환경부에서는 신기술 개발자 우대 및 부정당업자에 대한 중복규제를 개선 등을 위해 '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' 개정고시(안)을 마련하여 행정예고('24.12.2 ~ 12.23, 붙임 참조) 하였습니다.
2.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고시(안)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아래의 주요 내용과 의견제출 양식을 참고하시어 오는 12월 13일(금)까지 협회로 제출(팩스 : 02-3476-8464, 이메일 : koras01@naver.com)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개정고시(안) 주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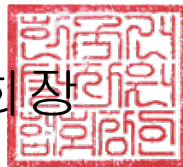
- 부정당업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항목 삭제(중복규제 개선차원)
- 부적정처리가능성 관련 신인도 감점 적용기준 조정
 -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 중 기소유예 처분인 경우 감점적용 제외
 - 영업정지 같음 과징금이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감점적용
-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신기술 협약자에 대한 배점 조정(개발자 배점의 90% 적용 → 개발자 배점의 80% 적용)
-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관련 배점적용 시 평가액 산정기준 조정(직전년도 공시액 → 가장 최근 공시액) 등

□ 의견제출 양식

업체명 (담당자)	개정안에 대한 의견 (찬성/반대/수정)	사유 (반대사유 또는 수정건의사항)

붙임 :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(안)(협회 홈페이지 참조) 1부. 끝.

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



12/03

주임 **염경미** 팀장 **권병문** 부장 **강한서** 사무총장 **조정환** 회장 **박하준**

협조자

시행 정책기획부-516 (2024. 12. 3.) 접수

우 06752 서울 서초구 바우미로27길 2 (양재동, 일동홀딩스(주)사옥) 3층 / <http://www.koras.org>

전화 02-2046-5923 전송 02-3476-8464 / cped2110@koras.org / 공개